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회

SAd.b.5

6

1995. 2. 9 (목)

한국노총 8층 강당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회

1995. 2. 9 (목)

한국노총 8층 강당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토 론 회 일 정

사회 : 조한천 노총 정책연구실장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인사말씀 박종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14:10 - 14:20	경과보고 지은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획위원장
14:20 - 14:50	증언 문필기 할머니
14:50 - 15:30	주제발표 박원순 변호사
15:30 - 16:00	지정토론 서경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외무부
16:00 - 16:30	자유토론
16:30 -	폐회

인사말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종근

친애하는 노조간부와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효재 공동대표를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정신대 피해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과거의 고통과 악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잊고 살아온 정신대 피해자 여러분들을 대하여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방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신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저지른 비인간적인 만행과 전쟁 범죄로 인하여 참혹한 고통 속에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일본이 저지른 정신대 만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잔악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지 치욕스러웠던 과거 역사 이전에 정신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겠습니다.

이에 노총은 그동안 '정신대 만행'에 대한 진상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정신대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정신대문제'가 30년전 체결된 한일 협정에서 일괄 타결 배상되었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최근 국내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자 각종 민간기구를 통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의미의 사죄나 배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시혜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는 극히 무책임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사죄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시련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ILO의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저촉되는 일본군의 정신대 강요 문제를 ILO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인 대응책도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특히 올해는 해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정신대 피해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오늘 토론회가 결실을 맺어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진지한 토론회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인사말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효재

우리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광복을 맞이한지 반세기가 흘러, 광복 50주년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식민지의 아픔은 끝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끝난지 45여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해온 할머니들중 국내에서 6명이 사망하였고, 현재 생존해 계신분들도 대부분이 여러가지 휴유증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의회가 지난해에 중국에 우리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그 할머니들중 2명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며칠전 그 곳의 할머니들을 만나고 온 윤정옥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일본군에 의해 짓이겨진 자존심과 명예를 아직 회복받지도 못한채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법적 배상은 끝났다고 하면서, 대신에 민간모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민간모금으로 피해자 개인에게 100만엔 이하씩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그들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났다고 하면서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범죄를 은폐,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국내 보수우익들은 폐전 50주년을 맞아 태평양전쟁을 미화시키고, 전몰자에게 감사하고 추도하는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도야마현을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그러한 내용을 결의하는가 하면 또한 며칠전에는 신문에도 게재되었듯이 자민당을 비롯한 신진당까지 일본정부의 부전결의에 대해, 그리고 태평양전쟁에 대해 수상이 사죄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동경에는 10층 건물로 된 전몰기념관이 금년에는 세워질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가 되어 감금된 상태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당사자들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오히려 그러한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감사하고, 추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국내의 흐름에 대해 가장 경계하고 분노해야 할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언론도 정치가들도 일반국민들도 이러한 문제를 거론 하거나 경계하자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기도를 저지하고,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고, 또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남김으로써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것이나, 아니면 영원히 역사속에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둔채 일본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 것인가 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요당했던 여성의 문제뿐 아니라 전여성의 문제요 남성을 포함한 인간의 문제요 인류가 계속하는 한 인권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들만이 동분서주 해왔는데, 이렇게 한국노총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결정하고, 오늘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앞으로 여러가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도 계획하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총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정부와 보수우익들의 움직임에도 큰 압력이 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 이후 앞으로 일본과 아시아 피해국의 노동자 단체들과 나아가서는 세계노동기구의 관심을 끌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박원순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토론자들께 감

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모임이 광복 50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활화산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 과 보 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획위원장 지 은 희

I.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성격

1. 국가가 기획, 입안해서(성병방지, 군사기 진작/강간방지) 국가와 군대, 경찰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제도
2. 식민지의 그리고 점령지의 13-18세의 약 12만~20만명을 강제로 그리고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여서 국가와 군이 직접 그리고 민간업자를 시켜서 강제적으로 모집한 제도
3. 군의 엄격한 통제하에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하면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제도
4. 패전후 이 여성들을 유기, 살상하였고, 기록을 없애 역사속에 폐기처분한 제도

한마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가장 추악한 범죄' 행위이다.

국제법적으로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이다. 그리고 강제노동금지 국제조약과 인신매매금지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II. 정대협 운동의 목표와 요구

1. 정대협 운동의 목표

- 1) 인간의 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범죄자가 처벌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을 때만이 가능하다.
- 2) 올바른 한·일 관계는 역사적 은폐속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없다. 굴욕적이며 타협적 한·일 관계는 바로잡아야 한다.
- 3)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아시아의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는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증대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다.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1990년 11월 16일, 정대협이 결성되었다.

2. 정대협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7대 요구와 경과

-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2)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라.
- 3)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라.
- 4)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라.
- 5)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위하여 위령비를 건립하라.
- 6)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가르쳐라.
- 7)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7대 요구	진행 상황	더 요구해야 할 사항
1. 위안부 범죄 의 진상의 전모를! 공개하라!	* 일본정부 태도변화 . 그런 일 없었다며 부인 . 있었다. 민간인이 한 일 . 국가, 군 개입인정 . 일본정부 1차 진상조사발표(92.7.6) . 강제성 부인 . 일본정부 2차 조사발표(93.8.4) . 강제모집의 주체가 민간업자로, 군, 관련의 주도적 관여 부인하는 등 . 부분적 강제성 인정 * 민간인 활동 . 위안부문제에 일본군, 국가의 주도적 관여, 명령체통 조사	*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 . 위안부 총 숫자 공개 . 정책입안자, 관리, 운영등의 명령체계 공개 . 위안부 총 숫자 공개
2. 위안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라!	. 위안부 제도 사실인정 그러나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전쟁범죄 인정

3. 위안부 범죄사실에 대해 사죄하라!
4. 국회의 사죄와 개인에게 사죄 실에 대해 사죄하라: "통석의 염"
5. 92년 1월 8일 미와자와 수상 방한시
"반성과 사과의 뜻"
6. 93년 11월 5일 호소카와 수상 방한시
"진사" 표현
7. 95년 2월 현재 연립여당의 국회의
부전결의안 조차 자민당 등이 반대
8.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대로
배상할 수 없다.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이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우호기금을 만들어서 민감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지불하겠다.(약 100만엔이하)
9. 추모비건립
10. 역사교과서에 1994년부터 7개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단순한 '종군위안부' 말의 수록
명기하여 가르쳐 개정하여 다루고 있음. (별지 참조)
11. 보다는 그 문제의 성격규정이 있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성 성격등의 어하고 전쟁범죄라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사실 빠짐
13. 한국역사교과서 개정도 같은 차원에서 요구
14. 책임자를 처벌 일본검찰, 정대협과 피해자가 제출한
하라! 책임자처벌 고소 고발장 접수거부

3. 정대협의 활동내용

1) 대 일본정부 활동

- 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국회, 정부를 상대로 하여 로비, 압력활동, 중언집회, 시위 등을 전개해 왔고, 특히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12시에 진행되는 수요정기시위는 1995년 2월 8일로 152차에 이르고 있다.

②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일본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일본검찰측은 접수조차 거부.

③ 국제중재재판 제소를 요구하는 중재합의서에 일본정부의 합의를 요구했으나 공식거부(1월 24일).

2) 대유엔활동 및 국제활동

1992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식발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이 적극 나서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중에 있다. 유엔활동의 결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적 범죄행위로 공인되고 있다.

활동결과 ① 유엔 인권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형태를 조사하도록 임명한 특별보고관인 반보벤 교수의 보고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도록 1993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하였으며, 그 보고서는 94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② 또한 1993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전쟁중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문제에 대해 조사하도록 특별보고관으로 린다 채베즈를 임명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고, 95년 5월 21-25(예정)일경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할 것이다.

③ 1994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 스와미를 임명하였고, 쿠마라 스와미는 95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국가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부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④ 1994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문제 특별보고관인 조아네와 귀세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문제를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⑤ ILO전문위원회에서 지난 1994년 9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이며, 이것은 일본정부가 93년 8월 2차보고서에서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⑥ 1994년 6월, 아태지역 각료회의에서는 전쟁중에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⑦ 1994년 11월 22일, 국제법률가협회(ICJ)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명백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과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는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3) 아시아피해자 연대활동

① 남북여성의 연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남.북한.일본여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남북여성이 정신대문제 대해 서로 연대활동함. 유엔등 국제활동에서 남북이 함께 공동포럼개최 등의 활동.

② 아시아연대

1992년 8월 10-11일, 서울에서 제 1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연대를 조직하였고, 이 회의 이후 년례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로의 활동을 교류하며 연대하고 있다.

아시아연대회의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북한, 네덜란드 등이다. 금년에는 제 3차 아시아연대회의가 2월 27-3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 피해자 할머니의 생활보호활동

① 92년 12월 1일, 정신대할머니생활기금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여 모금한 것을 93년 7월, 62명의 피해자에게 250만원씩 지급.

② 정부가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일시불 500만원과 월 15만원씩(95년에는 20만원씩), 의료혜택,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등을 94년 5월 국회에서 통하여 8월부터 시행.

③ 기타 할머니 복지활동

정대협은 할머니복지위원회를 기구내에 조직, 할머니들의 병원알선, 상담, 주거문제, 장례절차 등의 복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단체중 하나인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에서는 나눔의집 건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현재 6명의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

IV. 정대협의 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과 향후 정 대협의 활동방향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정부 스스로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2차 조사보고서에서 어린소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는데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행동이 국제 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대국이라는 국제적 위치를 이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사죄, 정신적·경제적 배상을 하지 않은채 이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더욱기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활용하여 약간의 시혜적 위로금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천박한 책략을 사용하고 있다. 1995년 2월 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민간모금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100만엔 이하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태도 어디에도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진정한 사죄의 마음을 찾아볼 길이 없다.

우리 정대협은 이 시점에서 일본정부에게 PCA의 중재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대협이 25번의 회의를 거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한데는 몇가지 중요한 운동적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조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범죄행위와 이에 대한 책임을 세계에 확인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PCA재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실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문제를 PCA에 가져가는 첫번째 이유이다.

둘째는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가해국이 세계 강대국의 한 나라 일지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 이 선례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가 다시는 역사속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는 할머니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일본정부의 물질적 회유에 굴하지 않고, 일본정부에 맞서 스스로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이긴 당당한 모습을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일년동안 여섯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병들어 계십니다만 '내가 싸우다 이기지 못하면 내 딸세대, 내 손녀세대라도 나서서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할머니들의 말씀대로 PCA재판을 통해 일본의 범죄행위를 밝히고 당당히 사죄받고 배상받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대협은 이런 의미를 가진 국제중재재판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첫째, 국내에 PCA운동의 기반확대를 위한 작업이다.

1) 법조인 특히 변호사들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PCA변호인단으로 참여하시게 하는 일이다. 현재 37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전후보상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이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에는 PCA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2)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선전작업이다. 민주당내에 정신대대책의원모임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3) 한국정부의 PCA운동에 대한 지원확인이다.

외무부는 정대협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두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 주었다. 하나는 1965년 한일협정에 책임자처벌문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할 것이고, PCA재판에 대해서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아일 22220-422)

4) 1992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수요시위의 대중적 확산방식 모색이다.

둘째, 국제적 선전작업의 강화이다.

1) 10월 9일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없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국제적 서명운동중 중국 무한에 버려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초청 증언집회 추진(1995년 3월 예정으로 추진중).

2) 현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전쟁중에 가해진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린다 차 베즈씨의 조사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 스와미씨의 조사, 심각한 인권침해범죄자에 대한 불처벌문제 특별보고관인 조아네씨와 귀제씨의 조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방문초청 및 토론회 계획.

3)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1995년 8월 30일 - 9월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NGO포럼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

셋째, 아시아피해국간의 연대강화이다.

넷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정부에 맞는 진상규명작업의 촉진이다.

1) 일본군 위안부 문제백서 출간

2) 할머니들의 2차 증언집 발간(인쇄 대기중)

3) 중국 무한의 버려진 할머니들의 증언록(출판사에 넘겨진 상태)

4) 할머니들의 현실과 운동을 담은 다큐멘타리 영화 제작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내의 여론확산과 국민들의 관심을 조직해서, 일본정부에게 국가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확산시켜서 일본정부로 하여금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의 가장 큰 대중조직체인 한국노총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광복 50주년에는 꼭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채택하여 국내에 큰 여론의 한줄기가 된데 대해서 우리는 큰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일본의 전국조직노동자단체를 움직이고, ILO가 직접 일본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도록 이끌어내어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함께 연대해 가자.

주 제 발 표

변호사 박원순

1. 서 론

그동안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러가지 국제법적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 역사상 보기 드문 잔혹한 이 제도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 발전시켜온 제 규범에 위반된다고 해석되었다¹⁾. 첫째로, 일본의 '종군위안부' 충원과 관리는 비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는 측면에서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책임자의 처벌과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었다. 둘째로, 일본이 그당시 가입하고 있던 '추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이른바 '부인 및 아동매매금지조약')에 위반하였다²⁾. 세째, 일본이 비준함으로써 준수가 강제되고 있던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가 미국과 일본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자못 부끄러운 일이었다. 필자 역시 문외한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이 능력에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시작과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제발표를 맡게 되었다. 진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제법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촉발되기를 바란다.

2. 강제노동조약의 성립과 내용

강제노동조약은 1930년 6월 28일 국제노동기구의 29번째의 협약으로 탄생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평화회의의 한 결

1) 토츠카 변호사는 '종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의 법적 근거를 비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 노예제 및 노예매매의 금지에 위반한다, 강제노동조약에 위반한다, 추업관계3조약에 위반한다는 4가지 점으로 요약하고 있다(戸塚 慶朗, “日本か知らない戦争責任”, 法學 ヒミナ-- , No.480, 1994.12, p.28).

2) 1904년 5월 18일 파리에서 성립된 이 조약에 일본은 1925년 10월 21일 가입하였다.

과로 창립된 이후 노동에 관한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국제적 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다해왔다. 당초 45개국의 회원국에서 1989년 현재 145개국으로, 1919년 노동시간에 관한 조약에서부터 1989년 원주민에 관한 조약에 이르기까지 169개의 개별노동조약들을 성립시키면서 발전해 왔다³⁾. 강제노동조약은 이 거미줄 같이 쳐진 노동조약 가운데 비교적 일찌기 체결된 조약 가운데 하나이다.

강제노동조약은 그동안 인류가 발전시켜온 노예제와 노예노동의 금지규범을 훨씬 세련시켜 만든 국제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하고도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세밀한 제한과 조건을 두어 강제노역을 인정하되 이를 위반할 수 없도록 치밀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약이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몇가지만 예로 들어본다.

첫째,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ur)이라고 함은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의 위협하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무”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제2조).

- (1) 순전히 군사적 성질의 작업에 대한 강제병역법에 의하여 사실상 강요된 노무
- (2)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의 공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무
- (3) 재판소에서 판결의 결과로서 공적 당국에 의하여 감독되고 관리되는 노무로서 사적 개인, 기업 또는 조직의 처분에 떠이거나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4) 전쟁, 화재, 홍수, 가뭄, 지진, 맹렬한 유행병, 가축의 유행병, 짐승과 곤충의 침입등의 재앙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립과 행복을 위협하는 경우에 강요되는 노무
- (5) 주민의 대표가 노무제공의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할 권리를 가지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통상적인 공민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고 그 지역공동체를 위해 이행되는 사소한 지역적 노무

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Geneva, 1989.

둘째, 추정연령 18세이상 및 45세 이하 성인의 건강한 남자만이 강제노동에 징집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과 조건이 따른다(제11조)

- (1) 관계자가 전염병에 전염되어 있지 않고 요구되는 일과 조건에 육체적으로 적합하다는 행정기관에 의해 임명된 의사의 사전결정이 있는 때
- (2) 학교 교사와 학생,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을 면제하는 것
- (3) 각 지역에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건강한 성년남자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
- (4) 부부 및 가족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

세째, 1년(12개월)을 하나의 기간으로 하여 강제노역에 종사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노역의 왕복기간을 포함하여 60일이다(제12조)

네째,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징집된 곳 또는 노역에 종사하는 곳의 비슷한 종류의 노역에 지급되는 대체적인 임금보다 더 많이 현찰로 지급하여야 한다(제14조)

3. 일본의 ‘종군위안부’ 제도 운영과 강제노동조약위반

가. 강제노동으로서의 ‘종군위안부’

일본에 의하여 자행된 ‘종군위안부’ 충원과 관리가 위의 강제노동조약에 위반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은 무조건 금지된다(제11조)는 점에서 ‘종군위안부’ 제도는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위 제11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과 조건하에서 그것도 일정한 연령층에 속한 건강한 성년 남자만을 강제노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노동조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대한 위반으로써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종군위안부’ 제도는 이 조약의 근간을 침

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강제노동조약은 강제노동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노동의 기간, 노동시간, 노동의 종류등에 구체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어 ‘종군위안부’들의 비참한 생활은 이 모든 제한에 위반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종군위안부’들의 생활 자체가 강제노동조약에서 말하는 ‘노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⁴⁾. 강제노동조약의 ‘노무’란 것은 아무리 강제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타당한 정도의 ‘노역’(work)과 ‘서비스’라고 할 것이다. ‘종군위안부’들에게 강제된 것은 그러한 사회적 타당성 있는 노무를 넘어선 ‘연속적 강간’의 범죄행위의 희생자로 만드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어쨌든 위 강제노동조약이 정의한 ‘강제노동’에 ‘종군위안부’들의 강제된 ‘위안’이 형식적으로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가입과 그 효력

일본정부는 위 강제노동조약을 1932년 11월 21일 조약 제10호로 비준하였다. 그리고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33년 11월 21일의 일이었다. 강제노동조약은 일단 효력을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10년간 조약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폐기통고를 하되 그 효력은 통고한 때로부터 1년 이후에 생겨나게 된다(동조약 제30조 제1항). 따라

4) 실제로 일본의 변호사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강제노동조약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戸塚悅朗, 위의 글, P.29). 그러나 조약의 원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노동’에는 단순한 ‘노동’(work)뿐만 아니라 ‘역무’(service)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면 형식적으로 ‘강제매춘’이 ‘강제역무’(service)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매춘 및 포르노를 위한 아동의 강제매춘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가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Labour Office, Report III (Part4a) :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s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General Report and Observa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s 81st Session 1994, Geneva 참조.

서 일본이 1932년 위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1944년 11월 21일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어 제2차 세계대전의 거의 전 기간동안의 조약은 일본을 구속할 수 밖에 없었다.

‘대일본제국헌법’에는 국제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 존중과 준수를 다짐하고 있는 현행 일본헌법 제98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전 전에도 일본의 국제법 준수책무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다. 일본이 가입, 비준한 조약과 확립된 국제관습법이 일본을 구속하고, 국내입법 조치가 없이도 일본법체계에 편입된다는 헌법해석은 전전과 전후를 막론하고 일관되고 있다.

4. 국제노동기구의 구조와 일본의 책임추궁

가. 국제사회에서의 강제노동조약 위반 논의

일본의 강제노동조약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1992년 5월 유엔 인권 위원회 산하 ‘현대형노예제에 관한 실무반’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경제사회이 사회와 협의자격을 지닌 비정부단체인 IED 대표로서 토츠카 변호사는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한 일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한국의 정대협이 ‘종군위안부’ 제도의 기획, 실행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당시에도 이 강제노동조약의 위반이 처벌의 근거로서 제시되었다⁵⁾. 일본정부는 그 조약에 가입하고도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전쟁중의 강제노역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수백만 아시아인들의 노동력을 착취

5) 강제노동조약 제25조는 그 조약의 내용에 위반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하여 처벌하도록 당사국에 의무화하고 있다.

하기 위한 대규모 강제노동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나. 국제노동기구에서의 강제노동조약위반 추궁

(1) 국제노동기구와 '종군위안부'문제 논의

국제노동기구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적은 없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국제노동기구의 논의 구조 속에서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과 한국의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듯이⁶⁾ 국제노동기구의 전문가위원회 위원이자 인도출신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P.N. 바그와디가 '종군위안부'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혀 이 문제가 국제노동기구에서 다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⁷⁾.

(2)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이행 담보조치

국제노동기구는 170여개의 많은 구체적 조약들의 이행상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대별하면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조약 및 권고의 실시에 관한 회원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심사하는 절차, 회원국에 의한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진정 또는 제소와 같은 재송의 방식 두 가지이다. 전자는 입법적, 행정적 통제절차이고 후자는 사법적, 준사법적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다⁸⁾.

(3) 국제노동기구의 활용방안

'종군위안부' 문제는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한 과거의 일이기는 하나 국제노동기구의 영역에서 다루지 못할 것은 아니다. 안건의 제출과 제소행위에 시효나 제적기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⁹⁾. '종군위안부' 문제가 비록 오래전에

6) 每日新聞, 1994. 9. 22자 기사등

7) 이 사람은 일본의 전후보상운동단체들의 초청으로 일본에서 '종군위안부'와 강제노동조약에 관하여 강연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戸塚悅朗, 위의 글 p.30

8) 高野雄一, 國際社會における人權, 岩波書店, 東京, 1977, p. 112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어 현재적 사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그 희생자들이 부당하게 문제 제기를 지연해 왔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보고서는 '전문가위원회'와 '총회위원회'에서 심사되게 되므로 일본정부의 년차보고서에 관하여 이 위원회들이 심사하게 될 때 노동자단체등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검토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노동자단체들은 국제노동기구 현장 제26조에 의한 제소로써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강제노동조약 불이행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장 제26조는 국제노동기구의 기관이나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협약 준수의 불이행을 제소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회원국이라 함은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 결 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는 종전과 더불어 인권의 중요성을 인류에게 자각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유엔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탄생하였고 기존의 여러 국제조직들이 인권의 보장을 위한 체제정비에 나섰다. 국제노동기구 역시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국제노동기구는 1944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회의를 열고 이른바 '필라델피아선언'을 채택하였다. 인권의 존중을 국제노동기구의 원칙의 하나로 공식 확인한 이 선언은 그후 국제노동기구 현장의 부속문서가 되었다.

9) 차별철폐협약(ICERD), 유럽인권협약(ECHR), 미주인권협약(AMR)등이 통보에 제출에 6개월이라는 시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제노동기구현장이나 국제인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것의 반대해석이다. 특히 국제인권규약 제정 당시 "시효제도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관행이며 인권이사회가 오래전의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라는 주장을 통하여 시효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Draft Rule 91(1), CCPR/C/L.2 and Add.1 and 2) 이러한 견해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배척되었다.

이와같이 국제노동기구가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국제기구가 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군위안부'문제가 유엔의 마당에만 머물러 왔던 것도 현실이었다. 유엔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를 이용하는 일은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확산이요, 그 해결을 위한 국제여론과 압력의 기중이 될 것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단체를 다른 정부대표와 사용자대표와 함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다른 비정부단체들의 제소권등은 부정되고 있으므로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단체들의 강력한 개입과 활동이 요구된다. 더구나 노동자단체에 의한 제소행위는 그동안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유엔 인권위원회나 소위원회등에서와 같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법적 해결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다¹⁰⁾. 해방 50년을 맞는 올해, 이 중대한 인권침해로 아직도 시련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군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제네바의 국제노동기구의 안마당에서도 펼쳐지기 바란다.

지 정 토 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서 경석

10)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면서도 그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통보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1. 정신대를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이 노동이라면 정신대 또한 강제노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노동단체가 국제노동기구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2. 그동안 <정대협>은 정신대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기하여 민간외교로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바가 있으며 이미 인권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된 바 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국제관계의 루트를 동원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정신대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김영삼대통령이 돈을 안받겠다고 한것은 방향이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우선 정부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서의 배상인만큼 정부의 입장이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4. 금년 8월이면 광복 50주년이 되는데 광복 50주년 이전에는 적어도 지난날의 앙금과 한(恨)이 청산되고 50주년 이후에는 성숙한 한일간의 모색이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정부의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일 양국 국민들간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편으로 국제회의에 제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양심적 시민 세력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대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미경**

해방 50년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1.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

1995년은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지 50년 되는 해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폐전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5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를 느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잔재의 청산과 바른 역사의 정립, 통일 원념을 이루어 민족적 대약진을 이루려는 꿈 등을 과제로 안고 있다. 또한 일본은 폐전국, 전범국의 어두운 과거를 셧고, 세계의 지도국으로 도약하는 시점으로 전후 50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구체적 사업으로서 일본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의상임 이사국이 되려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은 세계평화를 책임지는 지도국이 될 자격이 있는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일본은 과거 아시아 침략사와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이 부족하며, 왜곡된 역사를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의 합의에 따라 조선으로 진출하여 미개했던 조선을 근대화시켰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들은 50년 내내 히로시마의 비극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이 조선의 처녀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군 위안부로 삼은 일, 조선의 청장년을 강제로 징용하여 강제노동을 시킨 일, 우리의 글과 말과 이름을 빼앗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만행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만약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의 전면에 지금처럼 부각되지 않았더라면 1995년 일본은 매우 가볍게 과거 청산을 다 끝냈다고 큰소리칠 수 있었을지 모른다.

15세 전후의 소녀들, 미성년자들을 20만명 가까이 끌고 가서 강간하고 전쟁터로 끌고 다니며 강제로 성노예로 삼은 사건은 세계의 전쟁사, 식민지사에서 찾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로서, 일본은 이 문제의 진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교과서 개정을 외쳐도, 강제징용자 문제를 외쳐도, 원폭 피해자 문제를 외쳐도, 유골 송환 문제를 외쳐도 일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은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짓고자 허둥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인을 위시하여 세계의 누구도 이 진실을 듣고서는 일제의 만행,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의 과거사를 바로 정립하는 핵심 열쇠이다.

1990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된 이래 몇몇 노조에서 수요 시위에 참여하거나 활동비 지원을 위한 양말 판매 등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노조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공부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펴고, 돈을 모아서 일본 내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보았다. 노조가 단지 노동자들의 권리이나 인권만이 아니라 역사문제, 역사의 희생자들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활동을 펴는 것을 부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노총이 ILO조약과 연관하여 이 문제를 공부하고, 이후 ILO총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와 국민들에게 가장 압력이 되는 것은 국제적인 여론인 것 같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입하려는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여론이 가장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2. 소위 '무라야마 안'의 허구성

지난 2월 5일 교통통신 보도에 의하면, 무라야마 내각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우호기금'이라는 명칭 하에 10억엔 정도의 국민 모금을 해서, 기금 전액을 전 군대 위안부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안을 '전후 50주년 문제 프로젝트 팀'의 '종군위안부문제소위원회'에 제시하여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약 1천 1백명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따라서 1인당 약 100만엔(8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 예측된다. 이에 사회당은 적어도 200만엔(16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전

혀 진실한 해결의 노력이 아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의 이러한 제안이 그동안 피해자들과 정대협 등 관련단체들의 투쟁의 성과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가 민간의 모금을 행정적으로 지원하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은 '배상'의 형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금은 줄 수 있지만 배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법적인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대협의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의 어떤 협정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일본국을 상대로 한 개인의 권리라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일협정에서는 형사처벌 책임과 배상책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시하여 강제연행 등 과거사를 반성하고 청산하고자 한다면 한일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스스로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대협은 국제중재재판(PCA)에서 이 문제의 심판을 다루어 보자고 일본 정부에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한국에 대한 침략 사실의 인정 등 과거사를 전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히로시마의 비극만을 강조해 온 전후 일본인과 그 일본인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위대한 천황을 침략전쟁의 전범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전율을 느끼는 것이다.

3. 50년에 끝나지 않는 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5년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위로금을 받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무언가 매듭이 지어져야 하지 않겠는 가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미 조금씩 조금씩 진전을 보아 왔다. 자

첫 50년이라는 숫자의 무게에 밀려서 ‘이제 과거는 잊자’는 식으로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아직도 천황제에 정신적 뿌리를 두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향해 알려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호소하면서 우리는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들과 깊은 연대를 맺을 수 있었다. 일본 안에서도 양심적인 세력들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와 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하여 새로운 자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해결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5년에 커다란 진전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노총에게 바라고 싶은 구체적인 과제는 (1) ILO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 (2)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를 위한 로비활동을 열성적으로 해 줄 것 (3) 무라야마 내각의 민간 모금인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해 줄 것 (4) 수요 시위에 참여해 줄 것 (5) 전 조합원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해 줄 것 등이다.

MEMO